

제 62 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공고

상법 제 365 조 및 회사 정관 제 17 조에 의거 제 62 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.

----- 다 음 -----

- 일시: 2024년 3월 29일(금) 오전 10시
- 장소: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2길 19, SK 에코플랜트 13층, ESG 회의실
- 회의의 목적사항
 - 가.보고안건 : 영업보고, 감사보고,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
 - 나.부의안건
 - 제 1 호 의안 : 재무제표 승인의 건
 - 제 2 호 의안 : 이사 선임의 건
 - (제 2-1 호 의안) 사내이사 박경일 중임의 건
 - (제 2-2 호 의안) 사외이사 정연만 선임의 건
 - (제 2-3 호 의안) 기타비상무이사 신창호 선임의 건
 - 제 3 호 의안 : 이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
 - 제 4 호 의안 : 임원 퇴직금 지급규칙 변경의 건
-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
 - 직접행사 : 주주총회 참석장, 신분증
 - 대리행사 : 주주총회 참석장, 위임장(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, 인감 날인), 대리인 신분증
-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

우리회사는 「상법」 제 368 조의 4 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제 59 기 정기주주총회부터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,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.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.

 - 가. 전자투표 시스템

주소: 「<https://evote.ksd.or.kr>」, 모바일 주소: 「<https://evote.ksd.or.kr/m>」
 - 나. 전자투표 행사기간: 2024년 3월 19일 9시 ~ 2024년 3월 28일 17시
(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)
 - 다.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
 -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: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(K-VOTE 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)
 - 라. 수정동의안 처리: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

2024년 3월

SK 에코플랜트 주식회사
대표이사 박 경 일(직인생략)

위임장

SK에코플랜트 주식회사 귀중

본인은 2024년 3월 29일 개최하는 제62기 정기주주총회에 대하여 상법 제368조 2항(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)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본인 소유 주식의 의결권을 위임합니다.

--- 다 음 ---

주주	성명	(인)		
	주민등록번호 (사업자등록번호)		의결권주식수	
	주소			
대리인	성명		주민등록번호	
	주소			

구분	제1호	제2-1호	제2-2호	제2-3호	제3호	제4호
찬성						
반대						
제안자	회사	회사	회사	회사	회사	회사

- ※ 첨부된 참고자료를 참고하신 후 상기 안에 대해 찬성란 또는 반대란 중 한곳에만 O 또는 V 또는 기타 방법으로 찬반을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.
- ※ 의안 상정 순서는 주주총회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2024년 3월

SK 에코플랜트 주식회사 귀중

붙임: 이사 선임의 건

이사후보 : 3명

성명	출생년도	주요약력	비고
박경일	1969	SK에코플랜트 대표이사 사장 ('21~현재) SK에코플랜트 사업운영총괄 부사장 ('21) SK(주) 행복디자인센터장 ('20) SK(주) PM전략실장, 전략기획실장, BM혁신실장 ('17~'19) SK신세기통신, SK텔레콤 미래/경영전략실장 ('94~'16)	사내이사 (중임)
정연만	1961	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('19~현재)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 명예회장 ('16~'19) 환경부 차관 ('13~'16) 환경부 자원보전국장, 기획조정실장 ('08~'13) 환경부 수질관리국장, 금강유역환경청장 등('83~'07)	사외이사 (신규)
신창호	1970	SK Inc. PM 부문장 ('24~현재) SUPEX 추구협의회 자율책임경영지원단장 ('22~'23) SK 에너지 BM 혁신본부장 ('20~'21) SUPEX 추구협의회 자율책임경영지원단/전략지원팀 담당('16~'19) SK Inc. / SUPEX 추구협의회('09~'15) SK 이노베이션 ('96~'09)	기타비상무 이사 (신규)

붙임: 임원 퇴직금 지급규칙 개정 상세

현행 정관	변경 (안)	비고																						
<p>제 1 조 【퇴직금 지급 기준】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108 421 657 591"> <tr> <td>지급기준액</td> <td colspan="2">본사 근무기준 월정급여 (퇴직시점 본사근무 기준 연봉의 1/12)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3">지급률</td> <td>Grade</td> <td>기준</td> </tr> <tr> <td>사장</td> <td>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4.0개월분</td> </tr> <tr> <td>임원 (VP/부사장)</td> <td>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3.0개월분</td> </tr> </table> <p>※ VP CEO는 직책 사장으로 퇴직금지급률 4.0 적용</p>	지급기준액	본사 근무기준 월정급여 (퇴직시점 본사근무 기준 연봉의 1/12)		지급률	Grade	기준	사장	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4.0개월분	임원 (VP/부사장)	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3.0개월분	<p>제 1 조 【퇴직금 지급 기준】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703 421 1268 618"> <tr> <td>지급기준액</td> <td colspan="2">본사 근무기준 월정급여 (퇴직시점 본사근무 기준 연봉의 1/12)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4">지급률</td> <td>Grade</td> <td>기준</td> </tr> <tr> <td>회장, 부회장, 사장</td> <td>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4.0개월분</td> </tr> <tr> <td>EMD임원</td> <td>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3.0개월분</td> </tr> <tr> <td>계약임원</td> <td>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1.0개월분</td> </tr> </table> <p>※ VP CEO는 직책 사장으로 퇴직금지급률 4.0 적용</p>	지급기준액	본사 근무기준 월정급여 (퇴직시점 본사근무 기준 연봉의 1/12)		지급률	Grade	기준	회장, 부회장, 사장	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4.0개월분	EMD임원	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3.0개월분	계약임원	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1.0개월분	<p>제 1 조 변경 - Grade 명칭변경 및 기준추가</p>
지급기준액	본사 근무기준 월정급여 (퇴직시점 본사근무 기준 연봉의 1/12)																							
지급률	Grade	기준																						
	사장	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4.0개월분																						
	임원 (VP/부사장)	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3.0개월분																						
지급기준액	본사 근무기준 월정급여 (퇴직시점 본사근무 기준 연봉의 1/12)																							
지급률	Grade	기준																						
	회장, 부회장, 사장	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4.0개월분																						
	EMD임원	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3.0개월분																						
	계약임원	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1.0개월분																						
<p>제 2 조 【적용 대상】 제 1조의 지급 기준은 임원관리규정 상의 경영직 임원 및 전문직 임원에게 적용한다.</p>	<p>제 2 조 【적용 대상】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본 규칙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상무에 종사하는 등기임원 및 이사회 규정의 위임에 따라 대표이사가 선임하여 상무에 종사하는 비등기임원에게 적용된다. 사장 이상 Grade를 제외한 임원은 EMD임원 또는 계약임원으로 구분한다. 가. EMD임원은 통상적으로 단위사업 / 단위조직의 경영책임자로서 권한과 책임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. 나. 계약임원은 특정 전문 분야에서 한시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임명되는 사람을 말한다. 	<p>제 2 조 변경 - 적용대상 정의 및 구체화</p>																						
<p>제 3 조 【산출 요령】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급기준액은 퇴직시점 본사 기준 연봉의 1/12 금액으로 하며, Grade 별 재임기간에 비례하여 제 1 조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정한다.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 근속연수를 계산할 때, 년 미만의 잔여월수는 월할 계산하고, 월 미만은 일할 계산한다. 근속연수 중 Grade 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하는 지급률을 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. 	<p>제 3 조 【산출 요령】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급기준액은 퇴직시점 본사 기준 연봉의 1/12 금액으로 하며, Grade 별 재임기간에 제 1 조에서 정한 지급률을 각 곱하여 산정한다. 재임 중 사장 이상 Grade 로 변경된 경우 퇴직금 산정 시 Grade 가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재임기간을 분리하여 각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별도로 산정한다(사장 이상 Grade 로 변경 전 임원 재임기간에 대한 퇴직금 산정 시 Grade 가 변경된 시점을 퇴직 시점으로 보고 Grade 변경 전 임원 월보수를 적용함). 단, 산정된 모든 퇴직금은 최종 퇴직 시점에 일괄 지급한다.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 근속연수를 계산할 때, 년 미만의 잔여월수는 월할 계산하고, 월 미만은 일할 계산한다. 	<p>제 3 조 변경 - Grade 별(사장이상) 퇴직금산출요령 변경 - 중복문구 삭제</p>																						
<p>부칙(2020.3.27.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20년 4월 1일부터 개정·시행한다.</p>	<p>부칙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이 규칙은 2020년 4월 1일부터 개정·시행한다. 이 규칙은 2024년 4월 1일부터 개정·시행한다. 단, 본 규정 시행이전에 사장으로 취임한 임원에 관하여는 제 3 조 제 2 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장 취임 전 임원 재임기간에 대한 퇴직금 산정시 2024년의 월보수를 적용한다. 	<p>부칙 조항 변경 - 부칙내용 일원화 및 예외사항 삽입</p>																						